

공익제보 이송사건 조사결과 보고서

접수번호	청렴포털 2025-00078, 2025공익3457	담당자	소속 : 화성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성명 : 박미현 주무관 Tel) 031-5189-6777
접수일자	2025. 12. 29.	처리일자	2026. 1. 28.
피신고자	000000서비스 유한회사		
조사결과	○ 신고내용: 화성시 신동 ***번지,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층식 랙의 「건축법」 위반 여부 확인 요청 ○ 검토 결과 - 적층식 랙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물류센터(창고시설)내에 설치하는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(포장, 해체, 재포장 등)의 물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이고,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, 해체, 이전 등이 가능하며,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, 이를 상기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(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)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. - 공익신고자의 적층식 랙 「건축법」 위반 여부 관련 질의(2025. 6. 17.)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음. - 본 건과 관련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, 해당 적층식 랙이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작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「건축법」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.		
행정상 조치 사항	-		
형사상 조치 사항	-		
신분상 조치 사항	-		
기타	-		
첨부			

